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3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22.

발 의 자 : 이정문 · 김철민 · 임호선
민형배 · 서영석 · 기동민
이동주 · 장철민 · 안민석
박상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거나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 및 「건축법」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연취수량 대비 물 재이용량 비율이 0.8%(쿠웨이트 35%, 이스라엘 18%, 싱가포르 14%)로 집계되어 물 재이용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축 연면적 기준은 지나치게 큰 규모를 요구하는 점, 생활하수시설은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 물의 재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중수도 설치·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고,

공장 및 발전시설에만 적용하던 폐수배출량 기준을 생활하수시설에도 도입하여 공동주택에도 중수도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등).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제1호 중 “6만제곱미터”를 “2만제곱미터”로 하고, 같은 항
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전체 세대수가
300세대 이상인 주택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수도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
행 이후 신축(증축·개축 또는 재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는 숙박
및 목욕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<u>6만제곱미터</u> 이상인 시설물	----- ----- <u>2만제곱미터</u> ----- -----
2.·2의2. (생략)	2.·2의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2의3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</u> <u>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전체 세</u> <u>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주택</u>
3. ~ 7. (생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~ ⑩ (생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